

개정법령 / 건축사법 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규칙중 개정령(82. 8. 20개정)

(건설부령 제336호)

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제 1 항중 “국가기술자격증사본”을 “국가기술자격증사본(영 제 2 조의 2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 3 항중 “15일이내”를 “30일이내”로 한다.

제 4 조제 2 항중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6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전축사자격 특별전형 시험 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와 영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전축사자격 제 1 차시험 응시원서는 별지 제 7 호의 2 서식에 의한다.

제 8 조중 “영 제 8 조제 2 항을 “영 제 8 조제 3 항”으로, “별표 1 파”를 “별표 1 및 별표 1 의 2 와”로 한다.

제 10 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 1 항 각호의 수수료중 당해사무가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21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견토 내용은 별지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 12 조제 1 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 2 항중 “영 제21조 제 4 항”을 “영 제25조제 5 항”으로 한다.

제 15 조제 1 항중 “영 제23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플랜트 엔지니어링 용역업체와 종합건설기술 용역업체”를 “법 제 25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체”로 한다.

제 1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8 조 (조사 및 검사대상전축물등) ① 영 제25조 제 3 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2 층 이하로서 연면적 1 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당해 용도외의 용도와 병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2 분의 1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② 영 제25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조사 는 별지 제27호 서식 및 별지 제27호의 2 서식에 의한다.

제 18 조의 2 를 삭제한다.

제 23 조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고하고, 설계수급대장에 기재하여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 24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4 조 (설계도서의 비치·보관) 법 제30조 제 3 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전축사 사무소개설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당해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10년간 그 사무소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명 “시험파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을 “건축사자격시험파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으로 한다. [별표 1의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영 제26조”를 “영 제25조”로, “확인서”를 “조사 및 검사조서”로 하고, 제 6 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 7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비고
6. 법 제30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전축사보수교육을 거부·기피한 경우	1 월 이내의 폐쇄명령	
7. 기타 제 1 란 내지 제 6 란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 및 전축법에 위반한 경우	제 1 란 내지 제 6 란 유사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함	

[별지 제 1 호서식] 중 “건축사법 제 2 조 제 2 항”을 “건축사법 제 2 조제 2 호”로 한다.

[별지 제 5 호서식] 중 “건축법시행규칙 제 2 조 제 3 항”을 “건축사법시행규칙 제 2 조 제 3 항”으로 한다.

[별지 제 7 호 서식] 중 “동법시행령 제 5 조”를 “동법시행령 제 4 조”로 한다.

[별지 제 7 호의 2 서식] 중 “[] 제14조 본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에 “[] 제16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한다.

[별지 제 10호 서식]의 주의사항란의 2 중 “15일내”를 “30일이내”로 한다.

[별지 제 12호 서식] 중 “건축법 제 8 조제 3 항”을 “건축사법 제 8 조제 3 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6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중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제 4 항”을 “건축사법시행령 제25조제 5 항”으로 하고, “건설부장관”을 “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중 “건설부장관”을 “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0호 서식] 및 [별지 제21호 서식] 중 “건축사법시행령 제23조제 4 항”을 “건축사법 제25조제 2 항”으로 한다.

[별지 제22호 서식] 중 “플랜트엔지니어링 종합건설기술

용역업체”를 “용역업체”로 한다.

[별지 제2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의 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 서식]의 주의사항란의 2 중 “15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설계도서 신고서	처리기간				
	2일				
① 건축주	② 지역지구	지구			
③ 대지위치	④ 용도				
⑤ 대지면적	M ²	⑥ 건축면적	M ²	⑦ 건폐율	%
⑧ 공사규모	천원	⑨ 건축연면적	M ²	⑩ 용적률	%
⑪ 구조	조	⑫ 규모	지하층지상층	⑬ 공사종별	
⑭ 설계자	⑮ 면허번호	⑯ 설계년월일	년 월 일		
⑰ 기타					

건축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상호 또는 명칭

등록번호 제 호

(인)

설계건축사

(면허번호)

건축사

(인)

(면허번호)

건축사

(인)

(면허번호)

대한건축사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설계도서 사본 1부	
2. 설계계약서 사본 1부	없음

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주			
대지위치			
대지면적 (M ²)		지역지구	
건축면적 (M ²)	층	수	지상 지하 층
연면적 (M ²)	용	도	
구조	설계년월일	19 . . .	
공사종별	조사 및 검사년월일	19 . . .	

상기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건축사법 제23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현장조사 및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 저촉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인함.

19 . . .

첨부: 1. 현장조사서 1부

2.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서 1부

조사 및 검사자:

건축사면허번호 : 제 호

건축사사무소등록번호 : 제 호

사무소명 :

건축사성명 : (인)

(시장 · 군수)

귀

하

현장조사서

대 지 현 황	구 분	조 사 내 용
	대지조성의 필요성	
	대지의 안전여부	
	대지내 배수지장 유무	
	토지의 형질변경 필요유무	
	대지내 지상, 지하의 지장물 유무	
	대지내 공중이 사용하는 통로 유무	
도 로	인접대지와의 고저차	
	대지에 접하는 도로폭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 및 폭	
	대지에 접한 도로의 사용 지장 유무	
기 타	대지와 도로와의 고저차	
	기존 건축물 여부 및 적법 여부	
	대지경계선과 인접건물과의 거리	
	대지부근의 고압선과 신청전선과의 최단거리 및 높이	
종합 의견		

건축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

1. 건축개요

대 지 조 건	위 치				
	지 역				
	지 구			지 목	
	면 적			전면도로폭	M
용 도	주 용 도				
규 모	구 분	신 축	비 신 축		
	건축면적 (M^2)		기 존	신 청 부 분	계
	연면적 (M^2)				
	건폐율 (%)				
	용적율 (%)				
구 조			공 사 종 별		
착공예정일	19 . . .		준공예정일	19 . . .	
타 법령과 관계					

2. 총별면적

총별										계
구분										
신축										
비 신 축	기 존									
신청부분										
계										

관계법령 저촉여부 검토

가. 대지

- (1) 지목은 _____로서 지목변경 불필요함.
 (2) 토지의 소유 및 권리등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이 가능한 내용

내 용

(3) 대지면적은 _____ M^2 로서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 _____ M^2 에 적합함.

(4) 대지의 조성

- 가) 굴착부분이 없음.
 나) 대지조성의 필요가 있으며, 전축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함.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한 대지임.

- 가) 폭 ___ M 도로에 ___ M 접한 대지임.
 나) 폭 4 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중심선에서 ___ M 후퇴하여 건축물을 배치 하였음.
 다) 폭 ___ M 길이 ___ M의 막다른 도로에 접한 대지이므로 도로 중심선에서 ___ M 후퇴하여 건축 토록 설계되었음.

나. 배치계획

- (1) 건축선에 저촉되지 아니하게 설계되었음.
 (2)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띤어야 할 거리는 다음표와 같음.

(단위 : cm)

구 분	외벽 각부분으로 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정북 방향의 수평거리	외벽 각 부분으로 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 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주거전용지역 안의 건축물			
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준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 (3)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띤어야 할 거리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함.
 (4) 건축물의 양식, 구조, 형태 및 기타사항은 지구내의 건축조례에 적합함.

다. 용도제한

- 대지의 입지가 ___ 지역 ___ 지구로서 건축법 시행령 (이하 이표에서 "영"이라 한다) 제 ___ 조 및 지구조례의 규정에 적합함.

라. 규모제한

(1) 건폐율

- 건폐율은 ___ %로서 법정 기준에 적합함.
 건폐율은 ___ %로서 강화지정된 기준 ___ %에 적합함.

(2) 용적률

- 용적률은 ___ %로서 법정 기준에 적합함.
 용적률은 ___ %로서 강화지정된 기준 ___ %에 적합함.

- 용적률은 ___ %로서 ___ 조례의 기준 ___ %에 적합함.

(3) 높이제한

- 건축물의 높이는 ___ M로서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M이므로 법 제41조의 규정에 적합함.

- 건축물의 총수가 2층이하 8M 이하로서 주거전용지역의 절대고 제한에 적합함.

- 건축물의 높이는 ___ M로서 ___ 지구조례의 규정에 적합함.

- 건축물의 높이는 ___ M로서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___ M 끼우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영 제90조의 규정에 적합함.

마. 구조 및 안전

- 거실의 바닥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___ M로서 영 제19조의 규정에 적합함.

- ___ 층 ___ 구조의 건축물로서 대지, 건축물, 용벽 등은 구조상 안전함.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___ 조치를 취함. 계단의 구조 및 치수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이 표에서 "규칙"이라 한다) 제 ___ 조의 규정에 적합함.

온돌과 온돌용 굴뚝의 구조 및 재료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설계되었음.

건축물의 구조는 규칙 제 ___ 조 내지 제 ___ 조의 규정에 적합함.

바. 채광 및 환기

거실의 바닥면적에 대한 유효 채광면적의 비율은 %로서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축물의 채광면적 비율 1/10 이상임.

환기면적은 규칙 제 ___ 조의 규정에 적합함.

사. 지하층 설치

지하층 설치 대상 건축물이 아님.

지하층 설치 대상 건축물로서 지상을 연면적 ___ M²로서 1/10 이상인 ___ M²를 설치함.

영 제47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지하층 설계가 면제됨.

산출근거

지하층의 구조는 영 제48조의 규정에 적합함.

아. 대지내의 조경

대지의 면적이 ___ 이므로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 ___ M²가 확보됨.

산출근거

자. 열손실 방지

열손실방지 의무대상이 아님.

열손실방지 대상으로서 ___ 재료를 두께 ___ cm로 시공토록 설계되었으며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적합함.

차. 기타사항

(1) 공사용 가설 건축물은 법 제47조 및 영 제98조의 규정에 적합함.

(2) 도로의 접용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적합함.

(3) 배수시설은 하수도법의 규정에 적합토록 설계되었음.

(4) 오수 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의 구조 및 용량 배수관의 규정등은 오물 청소법의 규정에 적합토록 설계되었음.

(5) 정화조의 방류구와 하수도의 연결상태는 양호하게 설계되었음.

(6) 전기설비는 전기설비기술 기준형에 적합하게 설계되

어 안전함.

(7) 공작물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음.

(8) 증축인 경우 ()

기존건축물은 위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며 증축된 후에도 조사내용과 같이 건축법령등에 위배사항이 없음.

(9) 개축인 경우 ()

기존건축물은 위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면 개축

하는 부분이 건축법등에 위배사항 없음.

(10) 대수선인 경우 ()

기존건축물은 위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며 대수선하는 부분이 건축법등에 위배사항 없음.

상기내용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건축법, 도시 계획법 등 건축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설계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건축허가 신청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27호의 2 서식]

건축물준공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주			
대지위치			
대지면적 (M^2)		지역 . 지구	
건축면적 (M^2)		총	수
연면적 (M^2)		용	도
구조		설계년월일	19 . .
공사종별		조사 및 검사년월일	19 . .

상기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축사법 제2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 및 검사한 결과 별첨과 같이 적법 타당하며 이로 인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확인함.

19 . .

조사 및 검사자 : 건축사면허번호 : 제 호
 건축사사무소등록번호 : 제 호
 사무소명 :
 건축사성명 : (인)
 (시장 . 군수) 귀하

건축공사의 설계도서에의 합치여부

1. 건축개요

대지조건	위치			
	지역			지목
	지구			전면도로폭
	면적	M^2		도로에접한 길이
	주용도			기타용도
규모	구분	신축	비친축	
	건축면적		기존	신청부분
	연면적			
	건축폐율			
	용적율			
구조			공사종별	
착공예정일	19 . .		준공예정일	19 . .
타법령 과 관계				

2. 총별면적

구분							
신축							
비 신축	기존						
신청부분							
계							

3. 관계 법령에의 저촉여부

(이면)

가. 대지의 안전 또는 토지굴착부분의 정리, 조경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함 부적합할 경우

내 용

나. 도로 및 건축선에 관한 규정에

 적합함 부적합할 경우

내 용

다. 지역, 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에 관한 규정에

 적합함 부적합할 경우

내 용

라. 전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대지안의 공지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함 부적합할 경우

내 용

마.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함 부적합할 경우

내 용

바. 건축물의 방화, 소방 또는 피난상 안전에 관한 규

정에

 적합함 부적합할 경우

내 용

사. 건축물의 채광, 환기, 위생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함 부적합할 경우

내 용

아. 건축물의 설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함 부적합할 경우

내 용

자. 건축재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에

 적합함 부적합할 경우

내 용

차. 지하층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규정에

 적합함 부적합할 경우

내 용

상기조사 및 검사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건축법,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준공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설 계 수 급 대 장

①연번	②수급 년월일	③대지 위치	④ 건축주	⑤ 대지면적 (m ²)	⑥ 건축 면적(m ²)	⑦연면적 (m ²)	⑧용도	⑨구조	⑩설계자	⑪감리자	⑫설계 완성일	⑬도서 신고일	⑭허가일자 ⑯착공일	⑮변 호	⑯착공일	⑰준공일	⑱비고

[별표 1의 2]

과 목	출 제 범 위	출 제 방 법
건축구조	일반구조 구조역학 철근콘크리트구조	필기시험 (객관식을 원칙으로 한다)
건축계획	계획원론 계획각론	

건축설계	설계설명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실기시험